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# 창원시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



창 원 시 의 회

# 창원시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의연월일 : 2026. 7. 1.

제 의 자 : 의 장

## 1. 제의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에 따라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선거 일시 :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6. 7. 1.)
- 선출 대상 : 창원시의회 부의장 1명
- 투표 방법 : 무기명 투표

## 3. 참고 자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
-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
- 창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

# 【관 련 법 규】

## □ 지방자치법

제57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## □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제8조(의장, 부의장의 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

⑤ 의장,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며,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·비방하는 발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.

## □ 창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수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(이하 “의장단”이라 한다)선거에 한한다.

**제3조(선거권과 피선거권)** 창원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**제4조(선거관리 업무)**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
2. 입후보자 등록·접수
3. 투·개표사무 진행
4. 각종 선거문서 관리
5. 당선자 확정통지
6.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선거관리 업무수행)** 선거관리 업무는 의회사무국장이 수행한다. 다만, 당선자 확정통지는 해당 선거 후 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 행위로 대신한다.

**제6조(선거공고)**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이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.

② 의장·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7조(후보자 등록 및 사퇴)** ①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은 중복 신청 할 수 없다.

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“별지 제2호서식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

사무국에 제출하거나, 해당선거전까지 신상발언 등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.

**제8조(후보자 명부 배부)** 후보자 명부는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.

**제9조(정견발표 순위)**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서로 한다. 다만, 상임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는 상임위원회 직제에 따른 후보자 등록 순서로 한다.

**제10조(선거운동 금지 등)** ① 입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
2.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
3.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
② 필요할 경우 후보자 상호 협의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투표 및 개표)** ① 투표를 기표식으로 할 경우는 “별지 제3호서식” 을 사용하고 기명식으로 할 경우는 “별지 제4호서식” 을 사용한다. 다만, 기표식에 사용하는 기표용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.

② 투·개표사무는 「창원시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.

③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으로 정하되 2명 이내로 한다.

④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12조(무효투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
3. 후보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것
4. 후보자 성명에 직위 등을 함께 표기한 것
5.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
6. 의장·부의장 선거 시 2명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
7. 상임위원장 선거 시 해당 상임위원장별 기명란에 2명 이상의 후보자

성명을 기재한 것

8. 기표식인 경우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에 해당하는 것

9. 그 밖에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

**제13조(투표용지 등의 보관)** 감표위원은 “별지 제3호” 및 “별지 제4호 “의 선거 투표용지와 “별지 제5호 투표결과 집계표” 를 의회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한 외의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「창원시의회 회의규칙」에 따른다.